

의안
번호

41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2. 19.

전문위원 강 영 숙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양순임 의원 외 15명

나. 의안번호 : 제412호

다. 제출일자 : 2025. 2. 3.

라. 회부일자 : 2025. 2. 10.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한국수어 문화의 확산, 한국수어의 날,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 농인을 위한 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위해 제안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정의(안 제2조)
-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 라. 농인 편의증진(안 제4조)
- 마.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 바. 한국수어 문화의 확산(안 제6조)
- 사. 한국수어의 날(안 제7조)
- 아.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자. 행정 및 재정 지원(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2. 6. ~ 2025. 2. 12.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전부개정안은 「한국수화언어법」을 반영하여 제명과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한국수화언어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신설하고 지원하여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성북구 장애유형별 장애인 현황 >

2024. 12월 기준)

연번	장애유형	합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소계	16,901	5,877(35%)	11,024(65%)
1	지체	7,095	1,216	5,879
2	시각	1,844	376	1,468
3	청각	2,681(15.8%)	439	2,242
4	언어	162	90	72
5	지적	1,182	1,182	0
6	뇌병변	1,651	870	781
7	자폐성	344	344	0
8	정신	606	588	18
9	신장	873	641	232
10	심장	33	21	12
11	호흡기	89	75	14
12	간	132	3	129
13	안면	17	6	11
14	장루·요루	147	11	136
15	뇌전증	45	15	30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제명을 현 조례상 용어인 “통역”에서 “문화”로 변경하여 통역뿐만이 아니라 농인의 한국수어 문화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포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안 제2조(정의) 정비

현행 용어별 각각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나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의를 따르는 것으로 정비하여 법률상 정의와 일치하도록 함.

○ 안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목 변경

현행 조례상 조 제목이 ‘수어활성화’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구청장 책무로 되어 있어 조 제목을 ‘구청장의 책무’로 변경함.

○ 안 제6조(한국수어 문화의 확산) 신설

구청장은 올바른 한국수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성북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8조(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신설

구청장은 농인들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 가족까지 서비스 대상자를 지원하는 근거를 제도화함.

※ 「한국수화언어법」 제12조(농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 제7조(한국수어의 날) 신설

한국 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서 정한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한국수화언어법」 제17조(한국수어의 날) ①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하며,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 행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안 제9조(행정 및 재정 지원) 제목 변경

현행 조례상 조 제목이 ‘지원’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 및 재정 지원’으로 조 제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비함.

○ 그 밖에 안 제1조(목적), 안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4조(농인 편의증진), 안 제5조(구청장의 책무), 안 제9조(행정 및 재정 지원) 정비

법령상 정의에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로 되어 현행 조례상 “청각장애인”을 “농인”으로 일괄 정비하고, 상위법령상 용어 반영, 약칭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정비함.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한국수화언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성북구 농인 등 그 가족까지 지원 대상을 확장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어 사용자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없이 입법취지와 내용이 적절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